

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1. 4. 13 선고 2020가단11713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1. A

피 고 2. B

변론 종결 2021. 3. 16

판결 선고 2021. 4. 13

주 문

1.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1. 피고가 2020. 4. 27. 채무자 D과 경남 창원군 E 전 840㎡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.
2.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창녕등기소 2020. 5. 12. 접수제794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기초 사실

가. 원고들은 2020. 3. 2. D으로부터 경남 창원군 E 전 840㎡(이하 '이 사건 토지'라 한다)를 6,500만 원에 매수하되, 계약금 650만 원과 중도금 400만 원은 계약체결일에, 잔금 5,450만 원은 2020. 3. 31. 지급하기로 약정했다.

나. 피고는 2020. 4. 27.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5,900만 원에 매수하고, 창원지방법원 창녕등기소 2020. 5. 12. 접수 제7941호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, 4호증의 각 기재(가지번호 포함, 이하 같다)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원고들의 주장 요지

원고들은 D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.

피고는 원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해함을 알면서도 2020. 4. 27. D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, 2020. 5. 12.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이는 원고들에 대한 사해행위이므로, 원고들은 피고와 D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, 피고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.

3. 판단

채권자취소권(사해행위취소권)은 채권자의 공동담보인 채무자의 책임재산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(대법원 1988. 2. 23. 선고 87다카1586 판결 등 참조).

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.

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피고와 D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,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권자취소권(사해행위취소권)을 행사할 수 없다.

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.

4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.

판사 박이랑